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장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75

발의연월일: 2020. 12. 23.

발 의 자: 장경태·김남국·문정복

박범계 · 안민석 · 오영환

유정주 • 이용빈 • 전용기

정춘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택시는 협소한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게 되므로 승객 안전 확보,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방지 등을 위해 여객을 합승하도 록 하는 행위를 금지해왔음.

그러나, 최근 IT기술의 발달로 기존 교통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이가능하게 됨에 따라 실명가입제, 자리지정 기능 탑재 및 전자요금결제만 실시하는 등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사례에 따르면 플랫폼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합승 중개서비스의 가능성과 해당서비스의 이용자 호응도가 확인되는 등 택시 합승관련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여건이 성숙됨.

이에 택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써 금지하고 있는 여객을 합 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운송플랫폼 을 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택시업계의 서비스 개선과 소비자의 다양한 교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(안 제16조제1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제1항제3호 중 "행위"를 "행위."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운송플랫폼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말하며,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)을 통해 합승을 중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6조(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 제16조(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 항 등) ① -----항 등)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ㅣ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• 2. (생략)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3.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<단서 신설> 다만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」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 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4 9조의18제1항에 따라 여객자 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 록을 한 자가 운송플랫폼(「여 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 제7호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말하며,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 정한다)을 통해 합승을 중개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. 4. (생략) 4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생 략)